

노동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“노동감독관 취업심사제도”를 검토·협의 중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5.7.(목) 한국경제(온라인), “근로감독관도 재산신고·취업심사 대상” 기사 관련

<주요 기사 내용 >

- 고용노동부가 7급 노동감독관(근로감독관)까지 재산신고 의무 및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감독관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타 부처(경찰·소방·국세청·공정위·식약처 등 5~7급)와 같이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·협의 중임
- 다만, 재산등록 대상에 대해서는 일선 감독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, 이를 토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감사관 감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경근 (044-202-7801)
		담당자	사무관	양민호 (044-202-7807)